

#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점검위원회 운영지침

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점검 시스템의 기획,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이원적 운영시스템)

본 대학원의 자기점검 추진시스템은 대학 전체의 자기점검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기점검기획위원회와 조직적 역할의 자기점검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구축한다.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자기점검기획위원회 : 자기점검기획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, 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 및 평가 관련 담당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 자기점검기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자기점검연구위원회 : 자기점검연구위원회는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본 대학원 교수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자기점검실무지원단 등 : 자기점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점검연구위원회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대학원 행정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 및 교내외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 제4조 (기능)

- ① 자기점검기획위원회 : 자기점검기획위원회는 본 대학원 자기점검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과 조정을 하며, 자기점검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, 자기점검 연구비를 확보하여 자기점검연구위원회가 자기점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.
- ② 자기점검연구위원회 : 자기점검연구위원회는 자기점검기획위원회가 설정한 점검일정에 맞추어 점검 절차 및 집필계획을 수립하고,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·점검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을 거쳐 자기점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.

## 제5조 (자기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- ① 자기점검기획위원장은 본 대학원 개원 후 3년차까지는 매 학년 종료 시마다, 4년차 이후는 매 2학년 종료 시마다,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대학원 운영의 각 분야에 대한 자기점검과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자기점검연구위원회는 점검이 종료된 후 각 영역별 점검연구보고서 1차(안)을 보고한 후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자기점검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③ 자기점검기획위원회는 자기점검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대학원 운영의 미비점 및 보완 점 등을 망라한 백서를 발행하여 본 대학원의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(임기)

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